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 심사경과

1. 심사일정

- 가. 제 안 자 : 부천시장
 나. 회부일자 : '94. 11. 8
 다. 상정일자 : '94. 11. 14
 라. 의결일자 : '94. 11. 14

2. 제안설명 요지

가. 설명자 : 주택과장

나. 내 용

-'94. 5. 28일 대통령령 제14271호로 건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위임 및 기존 조례의 시행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여 건축활동 및 시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며, 개정 주요골자는 법의 요건이 부적합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의 완화, 조경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 조경의무면제, 전용 주거지역안에서의 주차장 건축허용,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일반음식점 규제완화 및 석유 및 가스판매소 건축허용, 공업지역안에서의 당해 공업지역 생산품목 판매시설 건축허용, 생산 녹지지역안에서의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 용도 및 냉동창고 용도 건축허용, 공업단지 및 준도시지역에서의 건축선 이격거리 완화, 공개공지의 세분화 및 복합용도 규정하여 건축물의 공공성 추구 등 전반적으로 시민편의를 위한 완화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제안임.

3. 질의답변 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현 개정안의 주 내용중 규제되는 것은 없는지? • 적용의 특례에서 당해지역지구의 건폐율을 20%가산한다면 정상적인 택지보다 건폐율 높지 않은지? • 주거지역안에 현재 석유 및 가스판매소가 없는지? • 조경의무 면제대상은 무엇이 있는가?	• 주민편의 행정으로 완화되는 사항임. • 대지최소면적의 건폐율에 9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 기존 석유 및 가스판매소는 지역마다 산재해 있음 • 염분함유 등 기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되겠음

4. 반대토론 요지

- 주거지역안에 석유 및 가스판매소 시설은 주민들에게 항상 위험을 주는 사항으로 제외되어야 하며, 조경 의무의 면제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확대 해석할 소지가 있어 면제대상을 시장이 정하도록 위임해야 함.

5. 찬성토론 요지

- 특별히 문제될 소지가 없으며 규제가 아닌 완화 사항임.

6. 소수의견 요지

- 일반 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사항에서 저장탱크 용량 10톤 이하의 액화 석유가스 충전소도 제외되어야 함.

□ 심사결과 : 수정의결(수정안 별첨)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번호	310
------	-----

제안년월일 : 1994. 11. 14

제안자 : 도시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제한 및 대지안의 조경에 대하여 위험물 시설의 제외 및 조경에 필요한 조치가 곤란한 경우의 대상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시장이 정하도록 하므로써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조경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 조경의무 면제대상을 시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11조)
-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사항 중 석유 및 가스판매소를 제외(안 제18조)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1조(대지안의 조경) 제2항제6호중 “경우의”를 “경우로서 시장이 정하는”으로 한다.

안 제18조(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제10호중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또는 석유 및 가스판매소”를 삭제한다.

수정안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1조(대지안의 조경)	제11조(대지안의 조경)	제11조(대지안의 조경)
① (생 략)	①(현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5(생 략)	1-5.(현행과 같음)	1-5.(현행과 같음)
(신 설)	6.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의 건축물	6. _____ _____ _____ <u>경우로서 시장이 정하는</u>
(신 설)	7. 축 사	7. (개정안과 같음)
6. (생 략)	8. (현행 제6호와 같음)	8. (개정안과 같음)
제18조(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18조(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18조(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9.(생 략)	1. (원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10.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 는 주유소 및 저장탱크 용량10톤 이하의 액화석 유가스 충전소에 한한다.)	2-9.(현행과 같음)	2-9.(현행과 같음)
	10. _____ _____ _____ _____ <u>또</u> <u>는 석유 및 가스판매소</u> <u>에 한한다</u>	10. _____ _____ _____ _____ <u>에</u> <u>한한다.</u>
11-15.(생 략)	11-15.(생 략)	11-15.(현행과 같음)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10
의결 년월일	94. 11. 19 (제32회)

제출년월일 : 1994. 11. 8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1994. 5. 28 대통령령 제14271호로 건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 위입 및 기존 조례의 시행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 부천시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건축활동과 관련된 시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함.

□ 주요골자

- 도시설계시설, 토지구획정리, 도로의 설치로 인한 법의 요건이 부적합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의 완화
- 조경읍 하기가 곤란한 경우 조경의무 면제
- 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주차장 건축 허용
-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일반음식점 규제 완화 및 석유 및 가스판매소 건축허용
- 공업지역안에서의 당해 공업지역 생산품목 판매시설 건축허용
-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 용도 및 냉동창고 용도건축허용
- 공업단지 및 준도시지역에서의 건축선 이격거리 완화
- 공개공지의 세분화 및 복합용도 규정하여 건축물의 공공성 추구

붙임 1.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2. 참고자료 1부. 끝.

[수정안포함]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건폐율)당해지역 지구의 건폐율에 10분의 2를 가산한 비율 이하로 하되 1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의 건축면적의 허용범위는 당해지역·지구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당해 지역 지구의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최대 건축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 제2항 제6호를 제8호로하고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등 조강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써 시장이 정하는 건축물

7. 축사

제17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자동차 관련시설.(너비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주차장에 한한다.)

제18조 제1호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안마사술포를 제외하며 단란주점은 대로에 접하고 사실상 상업화된 곳으로서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지역에 한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제24조 제3호 단서중 “기술개발원 “을” 기술개발원·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판매시설(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제25조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판매시설(당해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제26조 제5호 단서중 “직업훈련소”를 “직업훈련소,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로 하고, 제9호 단서중 “농·축·수산물 판매시설에”를 “농·축·수산물 판매시설과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로 한다.

제28조 제14호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중기 및 자동차개발원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에 한한다.

제29조 제10호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농·축·수산물 보관창고 및 상품전시창고에 한한다.)

제56조 제1호 및 제2호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호의 도표중 “공장 “을” 공해공장”으로 한다.

(다만,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에 한한다)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제57조 본문중 “(건축물의 치마포함)”을 삭제하고 제1호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 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에 한한다)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2조 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5호 및 제6호 중 “10%”를 “대지면적의 10%”로 하고 제13호를 삭제한다.

다만, 제1호내지 제12호의 용도가 2이상 복합되어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호의 확보비율에 각용도별 면적 비율을 곱한값을 합한 비율이상으로 한다.

제64조의 제2항의 “용도지역”을 “용도지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원	행	개	정
제4조(적용의 특례) ① (생략) 1. (생략) 2. 가.(건폐율)건폐율의 최대한도는 다음식에 의한 건폐율로 한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과 통치지구 및 공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10분의 1을 가산한 비율이하로 한다. $\text{건폐율} = (\text{가}) + <(\text{라}) - (\text{가}) > \times \frac{(\text{나}) - (\text{대지면적})}{(\text{나}) - (\text{다})} >$ (가)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기존 건폐율 (나)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다) 제4조제1항제2호 다목규정에 의거 완화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라) 10분의 9(완화시의 최대허용 건폐율) 나. 생략 ② 생략 제11조(대지안의 조정) ① (생략) ② (생략) 1-5(생략) (신설) (신설) 6. (생략)	제4조(적용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건폐율)당해 지역·지구의 건폐율에 10분의 2를 가산한 비율 이하로하되 1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경우의 건축면적의 허용범위는 당해지역·지구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당해지역·지구의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최대 건축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대지안의 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5(현행과 같음) 6.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한경우의 건축물 7. 축사 8. (현행 제6호화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형	개	정
제17조(전용 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생략) 1-5 (생략) (신 설)	제17조(전용 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생략) 1-5 (생략) (신 설)	제17조(전용 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6. 자동차관련시설(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주차장에 한한다.)	제17조(전용 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6. 자동차관련시설(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주차장에 한한다.)
제18조(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생략) 1.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파시술소를 제외하며 일반음식점으로서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하고, 대로에 접하고 사실상 상업화된 곳으로서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지역에 한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단란주점에 한한다.) 2-9 (생 략) 10.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주유소 및 저장탱크용량 10톤 이하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한한다.) 11-15(생 략) 제24조(전용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생략) 1-2 (생 략) 3. 교육연구시설(기술개발원 및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직접관련기 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접 혼련 시설에 한한다.) 4-8(생 략) (신 설)	제18조(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생략) 1.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파시술소를 제외하며 일반음식점으로서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하고, 대로에 접하고 사실상 상업화된 곳으로서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지역에 한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단란주점에 한한다.) 2-9(현행과 같음) 10. (..... 충전소 또는 석유 및 가스판매소에 한한다.) 11-15(현행과 같음) 제24조(전용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기술개발원, 공장에 관련되는 연구소 및) 4-8 (현행과 같음) 9. 판매시설 (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제18조(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현행과 같음) 1. (안파시술소를 제외하며 단란주점은 대로에 접하고 사실상 상업화된 곳으로서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지역에 한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2-9(현행과 같음) 10. (..... 충전소 또는 석유 및 가스판매소에 한한다.) 11-15(현행과 같음) 제24조(전용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기술개발원, 공장에 관련되는 연구소 및) 4-8 (현행과 같음) 9. 판매시설 (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제18조(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현행과 같음) 1. (안파시술소를 제외하며 단란주점은 대로에 접하고 사실상 상업화된 곳으로서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지역에 한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2-9(현행과 같음) 10. (..... 충전소 또는 석유 및 가스판매소에 한한다.) 11-15(현행과 같음) 제24조(전용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기술개발원, 공장에 관련되는 연구소 및) 4-8 (현행과 같음) 9. 판매시설 (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5조(일반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생략) 1-13(생략) (신설)	제25조(일반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생략)	제25조(일반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현행과 같음) 1-13(현행과 같음)	제25조(일반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현행과 같음) 1-13(현행과 같음)
제26조(중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생략) 1-4(생략)	제26조(중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생략)	제26조(중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현행과 같음) 1-4(현행과 같음)	제26조(중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현행과 같음) 1-4(현행과 같음)
5. 교육시설(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원, 기술계학원, 직업훈련소 및 도서관에 한한다.) 6-8(생략)	5. 교육시설(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원, 기술계학원, 직업훈련소 및 도서관에 한한다.) 6-8(생략)	5. () 직업훈련소,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및 () 6-8 (현행과 같음)	5. () 직업훈련소,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및 () 6-8 (현행과 같음)
9. 판매시설(농·축·수산물 판매시설에 한한다.) 10-20(생략)	9. 판매시설(농·축·수산물 판매시설에 한한다.) 10-20(생략)	9. () (농·축·수산물 판매시설과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10-20(현행과 같음)	9. () (농·축·수산물 판매시설과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10-20(현행과 같음)
제28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생략) 1-13(생략)	제28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생략) 1-13(생략)	제28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현행과 같음) 1-13(현행과 같음)	제28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현행과 같음) 1-13(현행과 같음)
14. 자동차 관련시설 (중기 및 자동차계 학원에 한한다)	14. 자동차 관련시설 (중기 및 자동차계 학원에 한한다)	14. () (중기 및 자동차계 학원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에 한한다.)	14. () (중기 및 자동차계 학원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에 한한다.)

신·구조물 대비표

현		개		정	
제29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 (생 략)		제29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 (현행과 같음)			
1-9(생 략)		1-9(현행과 같음)			
10. 창고시설(농·수산물 보관창고 및 상품전시창고에 한한다.)		10. (농·축·수산물 보관창고 및 상품전시창고에 한한다.)			
11-14 (생 략)		11-14 (현행과 같음)			
제56조(건축선으로부터 떨어져야 할 거리) (생 략)		제56조(건축선으로부터 떨어져야 할 거리) (현행과 같음)			
1.		1.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 한 공업지역 및 시설용지지구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 역(시설용지지구에 한한다.)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			
용	도	지역구분	떨어져야할거리		적용대상 건축 선
			1천㎡미만	1천㎡이상	
공	장	준공업지역	2.0미터이상	3.0미터이상	모든건축선
위험물제조소		기타지역	4.0미터이상	6.0미터이상	
위험물저장소					

신·구조물 대비표

현	행	개	정
2.	(다만,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시설용지지구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도표생략) 3-4(생략) 제57조(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피어야 할 거리) 법 제50조 및 영 제81조 본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각부분(건축물 치마포함)까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피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시설용지지구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도표생략) 2-4(생략)	2.	(다만,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에 한한다.)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도표 현행과 같음) 3-4(현행과 같음) 제57조(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피어야 할 거리) 법 제50조 및 영 제81조 본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각부분까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피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에 한한다.)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도표 현행과 같음) 2-4(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62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제62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제62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신 설)			
1-4(생 략)		1-4(현행과 같음)	
5. 관람질회시설 : 10%		5..... : 대지면적의 10%	
6. 관당휴게시설 : 10%		6..... : 대지면적의 10%	
7-12(생 략)		7-12(현행과 같음)	
13. 기타 (제1호내지 제12호의 용도가 2개이상 복합되어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인 건축물) : 각 호 용도비율의 산술평균비율이상		13 (삭 제)	
②-③ 생략		②-③ 생략	
제64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서의 준용) ① 생 략			
② 영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1호의 시설은 영별표1 제17호 공장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동항 제2호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별표제17호, 제18호, 제19호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동 항 제3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별표1 제14호, 제31조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동 항 제4호의 시설은 영별표1 제23호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② 영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1호의 시설은 영별표1 제17호 공장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동항 제2호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별표1 제17호, 제18호, 제19호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동 항 제3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별표1 제14호, 제31조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동 항 제4호의 시설은 영별표1 제23호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